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04
----------	-------

발의연월일 : 2019. 5. 23.

발의자 : 장석춘 · 문진국 · 임이자
박명재 · 윤한홍 · 성일종
윤종필 · 박덕흠 · 윤영석
김규환 · 경대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

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u>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u></p> <p>② ~ ⑤ (생 략)</p>	<p><u>사업자등은-----</u> ----- ----- ----- ----- <u>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